

##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- 호

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「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」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8 .

국토교통부장관

1. 기준명 :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

2. 구 분 : 부분개정

3. 개정목적

- 주변지반이 모래 또는 준설토일 경우 도로함몰, 지반유실, 싱크홀 등 방지를 위하여 뒷채움재 사용시 저유동성 고결재, Soil-cement 등을 활용 하도록 명시

4. 주요 개정내용

구분		주요(개정)내용
제2장 토공사	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3. 시공 3.3터파기 및 도랑파기	○ 굴착 되메움재료로 유동화 처리재료의 활용하여 지반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 수정 ○ 보통쌓기 재료에 대한 다짐도가 없는데 이에대한 다짐도 90% 확보하도록 개선함
	02224 뒤채우기 3. 시공 3.3 뒤채우기	

5. 관련단체 : 대한토목학회(☎ 02-407-4115)

6.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

-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토목학회(☎ 02-407-4115)로 문의하여 주시고,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([www.kcsc.re.kr](http://www.kcsc.re.kr))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